

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

(앞쪽)
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         | 처리기간 90일  |
| 신청인  | ① 법인명(상호)    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     | ③ 대표자(성명)       | ④ 전화번호    |
|      | ⑤ 소재지(주소 또는 거소) |           |

1.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⑥ 경정처분을 한 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⑦ 경정처분 내용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) |  |

2.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⑧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⑨ 결과 통지를 받은 날 |  |
| ⑩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용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) |  |               |  |

3. 과세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⑪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신청을 합니다.

신청인  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기획재정부장관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첨부서류 | 1.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(경정처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          | 수수료 |
|      | 2.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용(결과 통지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        |     |
|      | 3.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(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| 없음  |
|      | 4.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(첨부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)   |     |

자 르 는 선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조정 신청서 접수증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접수번호 호) |  |
| 상호(법인명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 소재지  |  |
| 첨부서류       | 1. 경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별지 서류( )    | 접수자      |  |
|            | 2.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( ) | 날짜도장     |  |

#### 작성방법

1. 청구인란의 인적 사항(①~⑤)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다만,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( ) 안에 함께 적습니다.
2. ⑥・⑦: 「관세법」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적습니다.
3. ⑧~⑩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세당국에 경정청구한 사항을 적습니다.